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514호
2. 발 의 자 : 김혜지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3월 28일
4.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II. 제안이유

- 서울시 어린이놀이기구에서는 음란물 시청 등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서울시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청 관리 소관의 어린이놀이기구는 해당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인용 조례의 오류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제4호).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5조제6호).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3.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28일 김혜지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514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통상 놀이터로 통칭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¹⁾ 따라 설치장소별로 관리·감독권자가 상이하고,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도시공원이나 주택단지, 종교시설, 도서관 등에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이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역시 서울시와 자치구,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교육청 소관 조례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3월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를 통해 어린이 놀이기구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어린이 놀이기구는 관리 주체별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7조의3과²⁾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에³⁾ 따른 행위 제한의 범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례로 강남구는 상위법령이 규정한 어린이놀이기구 내 행위 제한 사항 이외에 개인형 이동장치의⁴⁾ 출입과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성동구는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표-1] 서울시 교육청·자치구 소관 어린이놀이기구 행위 제한 범위의 차이

조례명	행위제한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조(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 2)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어린이놀이기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기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기구를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기구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4)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대체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저속(대체로 시속 25km)으로 주행하는 총중량 30kg 미만의 1인용 이동수단으로 규정되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휠 등),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자료 : 박세희, 뉴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개인형 이동장치,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이용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6342> (검색일 2024-04-15))

조례명	행위제한 관련 규정
제6148호, '16.3.24. 제정·시행)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1882호, '23.11.3. 개정·시행)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 <u>도로교통법</u> 」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u>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u> <개정 2023.11.3.>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 제1677호, '24.1.3. 제정·시행)	제4조(행위의 제한) ②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제1항의 순찰 등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 위반이 확인될 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한편, 서울시의회는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⁵⁾ 의결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이외에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9호, 김동욱 의원 발의, 2024.8.12. 발의)

- 해당 개정 조례는 한강공원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⁶⁾ 어린이 놀이시설 내 특정 행위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입법이 추진된 것입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술된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규정이 강화되는 정책적 기조와 관리 주체별로 시설 내 제한행위가 다르게 규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시설 설치·운영,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상 별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검토(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 안 제3조제2항제4호는 교육장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제1항은⁷⁾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제3조는⁸⁾ 교육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6) 한국경제(2024.7.7.), “‘내 눈을 의심했다’…놀이터에서 ‘병커샷’ 날린 중년 남성”,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767647> (검색일 2025-04-15)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유지보수, 안전 점검과 위생관리,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이에 개별 교육지원청은 어린이놀이기구 지도·점검 대상과 방식, 주요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된 「어린이 놀이기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조문은 기존 계획에서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 보강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는 1,274개소의 어린이 놀이기구 중 433개소(전체의 약 34%)에 이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운영 중인바,⁹⁾ 개정 조문의 시행이 기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행위 제한에 관한 검토(안 제5조제2호, 안 제5조제6호 신설)

- 안 제5조제2호는 어린이놀이기구 내 제한행위 중 하나인 애완동물의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근거를 규정함에 있어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동 조문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호와 같은조 제6호가¹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반려동물”이라는

관한 사항

6. 놀이기구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기구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놀이기구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장은 제2항의 내용을 QR코드 등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사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9)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3번(서울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기구 현황 등) 회신 결과를 정리한 것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동물보호법」이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는¹¹⁾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안 제5조제6호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행위에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서 개정 취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호는 법령이 규정한 제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안 제5조제6호가 규정하는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금지행위인 흡연이나 음주, 폐기물 투기, 차량 출입이나 주정차와 같이 이용객 등의 불편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바, 법령이 정한 제한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이용객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¹²⁾ 「항공보안법」,¹³⁾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2024. 3. 26.>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13)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 2016. 3. 29., 2020. 6. 9.>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¹⁴⁾ 등에 따른 대중교통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측면을 참고해볼 때 충분히 조례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로 보입니다.

3) 안전감시원에 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제2항은 교육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 지도 등을 위해 둘 수 있는 안전감시원을 자원봉사자로 위촉·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해당 조문이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 조문이 인용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의 조례명이 2021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개정·시행됨에 따른 사항으로,¹⁵⁾ 조례 간의 체계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해당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의 후속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인용 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¹⁶⁾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1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④ 시민은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3.26.>

15) 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2023.1.12. 서울특별시조례 제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16)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지도·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79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지도·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지도·점검의 일시
2. 지도·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